

瑞山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(案)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8. 20

3. 提案理由

-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내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 운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산시 지방 공무원여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,
- 시장에 대한 여비는 부시장 직급보다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를 지급하며,
- 기타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함.

5. 檢討意見

- 현행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공무원(국가) 국내여비규정, 공무원(국가) 국외여비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는 조례이며,
- 지난 '98. 2. 28일자로 공무원(국가)국내여비규정과 공무원(국가)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, 공무원(국가)여비 규정으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서산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도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,
- 본 개정 조례(안)대로 개정하여도 상위 규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